

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
번호 480

제출년월일:1998. 6. 10.
제출자:고성군수

1.개정 이유

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고성군 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하는 것임

2.주요 개정골자

- 여비지급 구분 조항을 신설,군수는 부군수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제2호를 적용(안 제3조)
-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함(안 제3조)
-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일원화 하므로써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을 삭제함

3.참고 사항

경상남도 회계12500-801(98.5.15) 「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」

4.본 문

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증개정조례(안)

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여비의 지급 구분) ①군수는 부군수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제2호를 적용한다.

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.

제4조를 삭제하고, 제3조를 제4조로하여 본문중 “국내여비 지급”을 “여비지급”으로하고, “국내여비 규정”을 “공무원여비 규정”으로한다

동조제1호중 “제8조 제1항·제3항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”을 제17조 제22조·제26조·제28조 및 제29조중”으로한다.

동조제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

2.제17조 제1항단서중 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없는것으로 본다.

동조제 3호중 “제17조제1항”을 “제18조제1항”으로하며, “동규정 제21조는 동규칙 제17조로 본다.”를 “동규정 [별표1]”은 “동규칙 [별표1]”로 본다.”로한다.

동조제 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.

4.제24조제5항중 “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”은 “지방공무원법제63조 제2항”으로 본다.

제4조제5호 내지제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5.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
6. 제29조제1항중 “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” 및 동조제2항중 “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”는 없는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

7. [별표1]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중 “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에 관한규정”은 “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”으로, 동호의해당공무원란중 4중 “공무원보수규정”은 “지방공무원보수규정”으로동표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중 1중 “전문직공무원규정”은 “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”으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(생략)		제1조(목적) (현행과 같음)		
제2조(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) ①		제2조(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) ①		
② (생략)		② (현행과 같음)		
<신설>		제3조(여비의 지급구분) ①군수는 부군수		
		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		
		비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한다.		
		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		
		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		
		적용한다.		
제3조(국내여비규정의 준용) 지방공무원의		제4조(국내여비규정의 준용) -----		
국내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		여비지급-----		
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,		----- 공무원여비규정-----		
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		공무원여비규정-----		
각호에 의한다.		-----		
1. 제8조제1항·제3항 및 제16조 제3		1. 제17조·제22조·제26조·제28조		
항 단서중 “소속장관”은 군수로		및 제29조중 -----		
본다.		---		
2. 제8조제3항 “재정경제원장관 및 총		2. 제17조제1항 단서중 “행정자치부		
무처장관과 협의하여” 및 제16조제		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		
3항 단서중 “총무처장관과 협의하		본다.		
여”는 없는 것으로 본다.				
3. 제17조제1항 단서중 “관용차량관리		3. 제18조제1항 -----		
규정 제4조”는 “지방자치단체관용		-----		
차량관리규칙 제3조”로, “동규정		-- “동규정 [별표 1]”은 “동규칙		
제21조”는 “동규칙 제17조”로 본다.		[별표 1]”로 본다.		

4. [별표 1]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
중 “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
에관한규정”은 “지방연구직및지도직
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”으로, 동표
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“전문직공
무원규정”은 “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”으
로,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“공
무원보수규정”은 “지방공무원보수규정”
으로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4. 제24조제5항중 “국가공무원법 제71
조제2항”은 “지방공무원법 제63조
제2항”으로 본다.

5.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
6. 제29조제1항중 “재정경제부장관 및
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” 및 동
조 제2항중 “재정경제부장관 및 행
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”는
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
하지 아니한다.

7. [별표 1]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
중 “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
관한규정”은 “지방연구직 및지도직
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”으로, 동호
의 해당공무원란 4중 “공무원보수규
정”은 “지방공무원보수규정”으로,
동표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중 1중 “전
문직공무원규정”은 “지방전문직공무
원규정”으로 한다.

제4조(국외여비규정의 준용) 지방공무원의 <삭 제>

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.

1. 제8조제1항의 “소속장관”은 “시장(※도지사·군수·구청장)”으로 본다.
2.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3. 제21조 및 제26조제4항중 “소속장관”은 각각 “시장(※도지사·군수·구청장)”으로 본다.
4. 제24조제1항 단서중 “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”은 “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”으로 본다.